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단2355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 2019. 8. 22.

판결 선고 2019.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2,133원 및 그 중
가. 30,434,755원에 대하여는 2018. 10. 22.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7.84%,
나. 6,823,639원에 대하여는 2019. 3. 2.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42,133원 및 그 중 30,434,755원에 대하여는 2018. 10. 2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84%, 그 중 6,823,639원에 대하여는 2019. 3. 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남수진

별지